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20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,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,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: 지방공기업법
 - 조례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지원
 -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자율주택)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(300호)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
 -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자율주택)을 통한 소형주택지 주거환경 개선,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활성화 도모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, 서울시 주택공급 실행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중임
-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출자금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김문근(☎ 2133-7247)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출자사업(출자금) 내역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2021년 (출자금)	산출내역
소규모주택정비사업	8,425	공공임대주택 매입(200호, 시비) : 21,400,000천원 × 50% × 52.49% = 5,616,000천원 ※ 매입임대주택 국비 : 1.9억원 / 호 ※ 시·SH 부담금: 국비를 뺀 금액의 5:5 부담 (감정평가금액)-(국비) × 50%

※ 21년 본예산 : 21년 총 출자금(32,100,000천원(300호) 중 21,400,000천원
(200호) × 50%) 중 52.49%

- 잔여예산 확보 : 300호에 대한 잔여예산은 추후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보(추경) 예정